pISSN : 2508-3384 eISSN : 2508-3392
https://doi.org/10.22640/lxsiri.2022.52.2.137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52 No.2 (2022)
한국국토정보공사「지적과 국토정보」제52권 제2호 2022년 12월 p. 137-152

지적측량 적부심사 유형별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ase Analysis by Type of the Cadastral Surveying Screening

오이균*
OH, Yi-Kyun

Abstract

The cadastral boundary points which cadastral surveyor presented on the ground by conducting cadastral surveying represents the limits of land ownership and give binding force and determination power. However the land disputes have increased these days mainly due to cadastral registration errors, surveying errors and land owners recognition error. In these cases, the cadastral survey interests try to find solution by either a administrative procedures by appealing civil complaint or border determination litigation through court. The neighboring residents and related organization have difficulties in resolving the civil complaints.

In this study cadastral surveying and cadastral boundary determination process has been reviewed and the results of cadastral surveying screening by Central Cadastre Committee from 2016 to 2021 have been classified. The outcomes of this research will be used for cadastral surveying and contribute for reducing land disputes and improve reliablity of cadastral surveying.

Keywords: cadastral boundary surveying, border determination litigation, central cadastre committee, cadastral surveying screening, land disputes

1. 서론

지적(Cadastre)은 국토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으로서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면적 및 소유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원영희 1979). 지적제도에서 토지의 조사단계는 토지의 등록 또는 관리단계에 우선하는 시작점이 되며, 이러한 과정속에서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조사 등록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지적측량이다. 법령상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를 밝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이는 개인 토지 소유권을 구분하는 경계확정의 수단이 됨과 동시에 국가의 토지행정에 제공되는 기초자료를 위한 원초적 과정이 되기 때문에 공 사법적인 측면에서 매우 큰 비

* 신한대학교 토지행정학과 교수 Department of Land Administration, Shinhan University(ykoh@shinhan.ac.kr)

중을 차지하고 있다(한국국토정보공사 2020).

그러나 장기간 도해지적을 바탕으로 지적측량제도가 이어짐에 따라, 기준점의 통일성 결여, 도면의 신축 등의 사유로 지적측량의 부정확성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따라 경계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하여 지적위원회를 위시한 행정부서의 심의, 경계확정의 소와 같은 법원에서의 확정판결, 그 외 발전적 방안으로 ADR같은 분쟁조정위의 활동 등의 도입이 모색되고 있다. 경계분쟁의 결과로 경계에 인접한 이해 당사자 들은 물론 관련 공적 기관들에 있어 민원 해결을 위한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측량의 경계결정 및 지적적부심사의 이론적 내용을 고찰하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6년여 동안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대표적 사례들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추후 지적측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들 사례를 참고하여 경계분쟁 사례를 줄이고 지적측량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는데 연구목표가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윤석준(2003)은 우리나라 토지경계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기존의 토지경계 분쟁에 관련된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경계분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김재복(2005)은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된 지적측량적부심사 대상 토지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송명경(2008)은 지적측량적부심사 결과에 대하여 구속력을 부여하며, 지적측량적부심사에서 기각이나 각하된 사항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하고 심사 및 절차 강화, 청구인 및 지적측량수행자 의견 제시 기회 부여, 전담 측량팀을 구성하여야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적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일(2019)은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위원회에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 기능 이외에 알선, 조정, 중재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적위원회 위원의 현장심의제도를 도입하며, 경계분쟁소송에 계류중이거나 확정판결을 받는 등 각하 대상임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 처리절차를 간소화한 약식심의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문승주(2020)는 토지의 소유권 범위와 경계설정 관계를 정립하였고, 경계 침범 유형인 건축에 의한 경계 침범, 동산의 부동산에 부합, 부동산 위에 적재된 동산 등의 경계설정 등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형질변경 등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반드시 경계복원측량을 명문화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는 주로 제도의 개선과 효율적 운형에 따른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고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 유형별 분석 및 대표적 사례 제시에 대한 논문은 소수로 한정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시간적으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으로 한정하였으며, 내용적으로는 그 기간 동안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재심사를 청구한 안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문헌조사법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38건의 유형과 사례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

2. 경계분쟁과 지적측량 적부심사

2.1. 경계

경계는 두 인접한 토지를 분할하는 선 또는 경계를 표시하는 가상의 선을 말한다. 보다 세분화하여 정의한다면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에 등록된 구획선을 지칭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생각하는 경계는 지표상의 경계 즉, 담장, 논두렁, 밭두렁, 표항 등을 토지경계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단순히 경

Table 1. Types of boundary

Source : Yoon. SJ, 2003, p11.

boundary types	description
Ground boundary	The boundary exists on the ground that is opposed concept of cadastral map boundary. Ground boundaries are fixed by cadastral surveying using cadastral map
Cadastral map boundary	The boundary registered on the cadastral map and forest map. It is also called register boundary
Real boundary	The boundary neighbors recognized as a real boundary
Legal boundary	The boundary which the court recognized land boundary
Occupied boundary	The boundary which land owners occupied land boundary
Actual boundary	The boundary which the land owners decided and has real land ownership

계라 명칭하고 있으며 토지의 매매·임대 등 토지거래와 경작, 건축물 설치 등 토지이용에 있어서 1차적 구획 목표가 되고 있다. 경계복원측량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주로 지적측량 신청인의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토지경계를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한다(김태훈 1995).

우리나라에서의 경계는 최초로 토지(임야)조사사업에 따라 당시의 소유자와 경계를 사정(査定) 하였는데, 사정은 토지소유권자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며 이 사정처분은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법원이 이를 인정해야 함은 물론이고 사정과 부합하지 않는 등기나 증명은 말소되어야 했다(곽윤직 1981).

임야조사사업 당시 정리된 행정처분인 사정과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정 또는 재결은 일반적으로 확정력이 있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대항 할 수 있는데 반하여, 확정판결은 당사자 간을 기속(羈束)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즉, 확정판결의 승소자 일지라도 임야조사령에 따라 사정을 받지 않으면 소송상 대방에 대해서만 판결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일반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을 말한다.

경계는 Table 1과 같이 그 설정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가지는데, 설정위치를 기준으로 하면 지상경계와 도상경계로, 설정주체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하면 현실경계와 법정경계로, 설정권리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하면 점유경계와 사실경계로, 관련법상의 분류에 따르면 사법경계, 형법경계, 공법경계로 구분할 수 있다(윤석준2003).

2.2. 경계분쟁의 발생원인

지적경계복원측량은 조선토지조사사업 이전에 실시된 구관습조사에서 조선인들의 토지경계인식을 토대를 반영하여 경계설정 원칙을 설정하고 기초측량을 근거로 일필지별로 경계와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경우 실시하는 측량을 뜻한다. 그러나 토지조사사업당시 경찰관서에서 기준점의 표석이나 점표는 영구히 보존하며 훼손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던 것에 비하여 일필지 경계점의 표식인 표항(標抗)은 토지조사측량 실시기간 중에만 표항을 훼손할 시 100원의 벌금만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측량 실시기간이 끝나면서 부터 사정필지의 경계점 관리가 소홀하게 되었다(조선총독부 1915). 이에 따라 사정필지의 경계점 관리 부실에 따른 지적측량의 부정확성이 발생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 다양한 토지경계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2.2.1. 등록당시 사정선의 훼손

물권의 객체를 결정한 사정경계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경계를 설정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시적 사정경계는 대부분 훼손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초의 사정경계는 새로운 경계의 관계 위치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법률적 효력을 이어가는 근원이 되는데 사정경계가 훼손되거나 없어졌다는 것은 새로운 경계설정을 위한 측량기준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되며, 사정경계에 의하여 측량하지 않은 새로운 경계선의 결정은 그 법률적 효력이 문제 된다. 따라서 기초점 성과를 사정경계와의 부합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측량기준으로서의 법률성이 인정되는데 사정경계의 훼손은 결국 경계가 민사상의 법률적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2.2.2. 도상경계의 문제

필지를 결정짓는 경계는 지적법상 도상경계를 말하고 이 도상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필지의 경계를 결정한다. 토지의 경계를 도상에 도해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정확도에 있어서 제도오차, 축척오차, 신축오차 등의 기술적인 오차의 한계로 인해 경계복원 능력이 떨어지며, 경계선을 지적도상에서 0.1㎜의 법정규격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지상에 경계를 복원하는 경우 축척에 의한 경계의 오차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과거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일부 원칙 없는 측량을 실시한 결과 현재 지적경계복원측량 시 국지적으로 기지사핵을 실시하여 성과를 결정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계분쟁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다.

2.2.3. 측량기준점 통일의 문제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할 당시부터 우리나라는 원점을 통일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국토 전반에 설치되어 있는 구소삼각, 특별소삼각 원점 시행지역을 통일하지 못한 상태로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였다. 1950년부터 지적과 측지가 이원화되면서 1~4등 삼각점의 관리가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소속되었으며, 이러한 측량원점의 다양화는 국지적인 지적관리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미터와 간 등 측량단위 및 성과가 통일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좌표계가 접하는 지역에서는 토지경계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한국전쟁으로 등록당시의 기준점 약 80%가 망실되었고, 1960년대 이후 망실된 기준점을 복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세부측량인 일필지 경계측량이 주가되는 지적측량의 성과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2.2.4. 지적공부 축척의 다양성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은 7종류의 축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축척이 인접되어 있는 필지들의 경우에는 측량시 그 차이로 인하여 오차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며, 중복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측량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2.2.5. 등록 당시 성과와의 불일치

토지조사사업(1910년~1918년)당시 세부측도 실시규정인 임시토지조사국 훈령 제67조에 의하면, Table 2와 같이 일필지의 형상은 현형과 차이가 없도록 적당히 측점을 배치하여 직선의 연속에 의해 이를 현시할 것으로 규정하여 굴곡 1척 이하인 부분은 이를 직선으로 간주하며, 수굴곡 2척 이하인 경우는 5간 이내의 길이에 대하여 평균할 수 있고 임야, 하천 등에 접하는 토지로서 그 수굴곡이 약 3척 이하인 부분은 10간 이내의 길이에 대하여 평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75년 지적법 전문개정 이전까지 시행하여 오다 오늘에 와서는 이 규정을 전면 배제하고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 등록 당시 및 규정의 개정 이전에 실시된 측량성과의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Table 2. Range of straight line recognition for the curve by scale Source : Kim. TH, 1995, p5.

Scale	Classification	Curve	Straight Curve
1/1,200	Land	Below 0.6cm	Below0.9cm Length Below 9.0m
	Forest River	Below 0.9cm	Below1.5cm Length Below 18m
1/2,400	Land	Below 0.9cm	Below1.5cm Length Below 18m
	Forest River	Below 1.5cm	Below0.3cm Length Below 36m

발생하여 토지경계분쟁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다(김태훈 1995).

2.2.6. 토지경계의 관리소홀

과거 왕조시대부터 한뙈기의 논밭이라도 소유하고 싶은 백성들의 욕구가 현재에 이르러서도 지나친 부동산의 소유욕 등으로 인해 소수의 국민들에게 토지 소유가 편중되어 있으며, 또한 이러한 토지 중 다수가 부재지주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가격상승을 바라고 방치하는 토지관리 소홀로 이어져 경계부분의 잠식등으로 도면과 실지가 안맞는 사례가 발생하여 경계분쟁을 야기하고는 한다(남윤구 2010). 이들 분쟁원인 내용들을 단순지형변동원인과 지적공부오류, 지적측량오류 등 3가지로 축약하여 다시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2.3. 지적측량 적부심사

지적경계복원측량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분쟁사유 등으로 발생하는 부정확성을 해결하고자 행정적 처리, 경계확정의 소와 같은 법원에서의 확정판결, 그리고 ADR같은 분쟁조정위의 활동이 있다. 먼저 행정적 처리로 볼 수 있는 공간정보관리법 28조에 의거한 지적위원회의 활동은 지적측량을 비롯한 지적업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적측량의 분쟁에 대하여 제한적이지만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적위원회의 의결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거나 법원의 판결을 구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경계확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없는 경우 지적측량 적부심사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경계 등이 확정된다.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국가가 관리하는 지적공부 및 지적측량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무료로 진행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원에 패소하고도 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확정판결은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에 소송이 진행되거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편이다(김재복 2005). 사법부를 통한 분쟁 해결 방식인 경계확정소송은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이다. 경계확정소송은 친자확인소송과 같은 비송사건의 본질을 갖지만 소송사건의 형식을 통해 경계를 확정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법원이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의 대법원 예규에 따라서 감정측량을 실시하고 경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을 하였다면, 토지경계의 다툼에 대한 권리

Table 3. Inconsistency between real boundary and cadastral map boundary Source : Moon. SJ. 2020. p21

Types	Cause of occurrence	description
Simple landscape variation	Korean War	After destroying buildings during the war most buildings have been constructed without cadastral surveying
	Rapid urbanization	Rapid industry development prompted landscape variation
	Illegal occupation	Illegal occupation in private and natinal land
	Illegal building alteration	Illegal building alteration without construction permit
	Sprawling development	Sprawling development without appropriate permit
	Natural topography change	Natural topography changes by natural disaster such as flood, typhoon and earthquake
Cadastral register	Initial registration errors	Mistakes and errors during the initial registration era
	Difference between maps, scales and administration area	Difference between maps, scales and administration area by separate cadastral maps
	Negligence of cadastral register	Map updating errors and damaging papered cadastral maps
	Error of cadastral restoration	Restoration error of cadastral register such as land book and cadastral map due to the Korean War
Cadastral surveying	Error of cadastral surveying	Error of cadastral surveying due to the lack of cadastral surveying historical data and professional knowledge
	Cadastral control points management error	Cadastral control points management error and error of cadastral surveying calculation
	Changing cadastral surveying equipments and technology	Error of changing cadastral surveying equipments and technology compare to Initial registration

관계의 최종적 판단을 내린 사안으로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끝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다수의 지적측량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지적위원회의 성과 심사와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된 성과와는 성과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기다렸다 인용하는 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사료된다. 현재 경계분쟁 해결 방법으로 지적분야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분쟁조정제도로 대표적인 ADR제도가 있는데 ADR제도는 법원의 재판이나 행정심판 등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동의나 합의에 기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송에 따른 분쟁당사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복잡한 소송절차를 따르지 않음에 따라 절차가 단순하며 소요시간을 줄임으로써 사회적인 분쟁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경계분쟁의 다양한 해결 방법의 일환으로 이러한 조정 중재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김일 2019).

3.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사례 분석

3.1. 현행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내용

먼저 토지조사사업기간 중 소유자와 경계를 최초 사정함에 있어서 불복이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재결을 구하도록 한 것(법률 제7호 토지조사법 제8조 1910. 8. 23)이 분쟁

Table 4. Number of application by City·Province

Source : Report from MOLIT

Application area	Number of application by year						Sum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Seoul	-	3	6	5	2	4	20
Gyeonggi	4	4	6	2	2	6	24
Gangwon	1	2	1	5	4	2	15
Chungbuk	2	1	2	2	2	-	9
Chungnam	3	1	1	1	4	-	10
Gyeongbuk	4	1	3	3	3	3	17
Gyeongnam	4	6	3	1	4	3	21
Jeonbuk	-	-	-	2	-	-	2
Jeonnam	5	2	2	-	-	3	12
Incheon	-	2	-	-	-	2	4
Daegu	-	-	-	-	-	1	1
Busan	-	-	-	-	-	1	1
Daejeon	-	-	-	-	1	-	1
Ulsan	-	-	-	-	1	-	1
Jeju	-	-	-	-	-	-	-
Sum	23	22	24	21	23	25	138

해결을 위한 노력의 시초가 되었다. 이후 1960년대 도입된 지적측량심의회(지적측량사규정, 국무원령 제176호 1960. 12. 31. 제26조, 30조)에서 3회 이상 부정확한 측량을 한 지적측량기술자에게 지적측량사징계위원회에서 지적측량사 등록취소, 1년 이내 지적측량업무정지를 부과하였으며 1975년 지적법 개정시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지적위원회를 두고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의 업무를 포함하였다. 이후 1995년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지방과 중앙지적위원회의 2심제를 채택하여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되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역할은 지적관련 정책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이며,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가 주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지적위원회에 접수된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청구건은 Table 4와 같이 총 138여 건으로 매년 20여 건을 넘어 꾸준하게 청구 건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6년간의 중앙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살펴

Table 5. Result of discussion

Source : Report from MOLIT

Year	Result of discussion			Sum
	dismiss	reject	adopted	
2021	20	3	0	23
2020	19	3	0	22
2019	20	3	1	24
2018	13	8	0	21
2017	15	6	2	23
2016	20	5	0	25
Sum	106	29	3	138

Table 6. Cause of rejection and numbers

Source : Report from MOLIT

Number	Cause of rejection	Years						Sum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	Related Court appeals	2	3	5	2	1	2	15
2	Incomplete claim requirements	2	3	2	-	-	-	7
3	Not a subject (over 90 days, duplication of application)	2	-	1	1	2	1	7
Sum		6	6	8	3	3	3	29

Table 7. Main cases of border determination litigation

Source : Report from MOLIT

Number	Cases	Years						Sum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	Error of recognition from applicant	19	16	15	17	14	8	89
2	lack of cadastral surveying historical data review	1	2	1	3	2	5	14
3	Difference of surveying results	1	3	1	1	2	6	14
4	Initial registration errors	1	-	2	3	3	4	13
5	Cadastral control points management error	3	1	2	-	1	-	7
6	Difference of double registration	-	1	-	-	-	-	1
Sum		25	23	21	24	22	23	138

보면 Table 5와 같이 전체 138건 중 기각 106건(77%), 각하 29건(21%), 인용 3건(2%)으로 나타났으며, 기각과 각하의 비율이 98%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과 같이 각하 총 건수 29건에 대하여 분석해 보면 법원에 소송 계류 중인 건이 15건으로 52%를 차지하였으며, 측량성과의 다툼이 아닌 대상 등의 청구요건 미비 건이 7건으로 24%, 90일 기간 내 청구일을 넘기거나 중북 신청 등으로 인한 청구대상 자체가 아닌 건이 7건으로 24%로 나타났다.

3.2. 유형별 사례 분류

6년간 청구된 138건을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지적측량에 국한하여 나타난 대표적 사례로는 신청인의 인식오류가 전체 65%를 차지하였다. 기준점과 현형법간의 성과 차이 발생과 측량성과결정 오류가 각 10%씩이고, 등록상 오류 9%, 기준점 성과 차이에 따른 오류 5%, 이중등록에 따른 성과 차가 1%로 미소하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나타난 6개 유형의 대표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Table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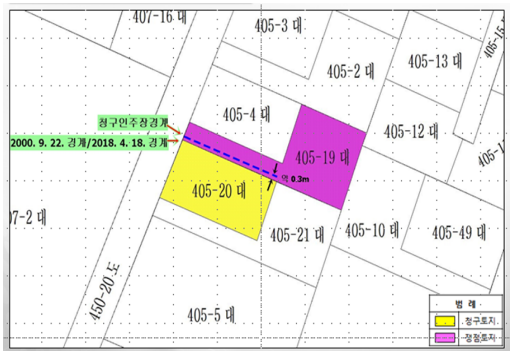

Figure 1. Error of applicant's recogn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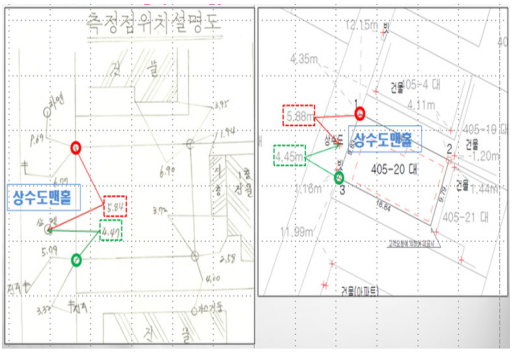

Figure 2. Boundary point's location description map

3.2.1. 청구인 인식오류

신청인 인식오류의 대표적 청구사례로는 Figure 1과 같이 청구토지 소유자의 인접필지인 쟁점토지가 재건축을 하면서 청구토지를 침범하여 담장을 쌓았고, 청구토지에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결과가 침범한 것으로 알고 있는 현 담장으로 경계설정이 되자 이는 잘못되었으며, 지적경계가 쟁점토지 쪽으로 약 30㎝ 이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이다.

청구토지는 2000년 및 2018년 경계복원측량을 모두 기준점성과로 실시하였으며, Figure 2와 같이 두 건의 측량결과도상 측정점 위치설명도를 조사해 본 결과 2000년 경계복원 측량 시 측정거리는 5.84m이고 2018년 경계복원 측량시 측정거리는 5.88m로 약 2~4cm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허용오차 이내의 근소한 차이로써 두 측량성과는 상호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역이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이고, 측정점 위치설명도 및 측량성과에 오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잘못 인식된 경계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3.2.2. 기준점과 현형법 성과 차이

기준점과 현형법 성과 차이의 대표적 청구사례로는 Figure 3과 같이 청구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결과 인접한 쟁점필지의 건축물이 청구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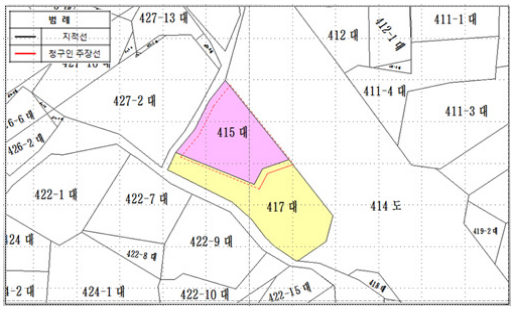

Figure 3. Difference of surveying results

경계를 침범하는 것으로 과거와 다른 이중 성과가 제시된 경우이다.

쟁점토지 소유자는 2002년 경계복원측량 결과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였기 때문에 2014년의 틀린 측량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7년 적부심사를 청구한 내용으로, 측정점위치설명도에 작성된 자료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해 본 결과 2002년의 측량성과는 지적기준점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 2014년도의 측량성과는 현형법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성과 차이가 발생하였다.

조사결과 Figure 4과 같이 청구토지 일대는 과거부터 기지경계선에 의한 현형법으로 측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적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지적소관청과 협의 후 구획을 지정한 "지적기준점좌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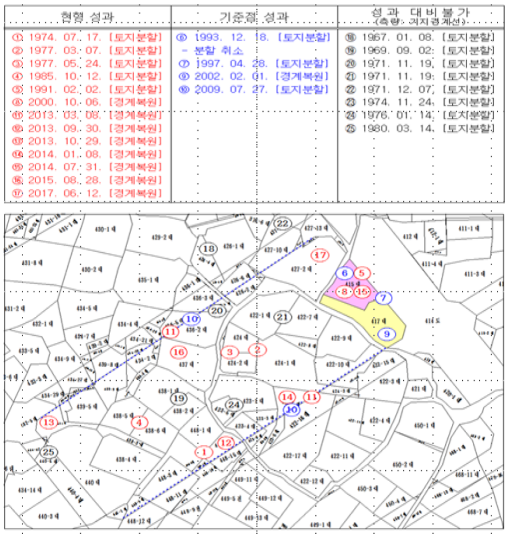

Figure 4. List of difference of surveying results

동수치 가감지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일관되게 측량성과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현형법에 따라 측량성과를 결정한 경계복원측량성과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3.2.3. 측량성과 결정 오류

자료조사 미비나 현형법간 성과차이로 인한 측량성과 결정오류의 대표적 청구사례로는 2회에 걸친 경계복원측량에서 약 0.5m~0.7m 차이가 발생한 경우로, 청구인은 해당 필지를 매입할 당시인 2003년 이전부터 쟁점부분에 기 설치되어 있었던 담장을 경계로 주장하며 청구한 내용이다. 조사결과 청구토지와 쟁점토지 사이의 경계는 1915년 조선토지조사사업 당시 최초 사정 등록된 사정지로 나타났다.

청구토지 주위의 과거 측량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Figure 5와 같이 1990년부터 2015년까지는 청구토지 북방향 도시계획도로 및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측량성과를 결정하였으며, 2016년 이후부터는 Figure 6과 같이 청구토지 동방향에 위치한 일부 사정선으로 판단되는 도로 및 도로 우측 블럭 기지 현형 성과에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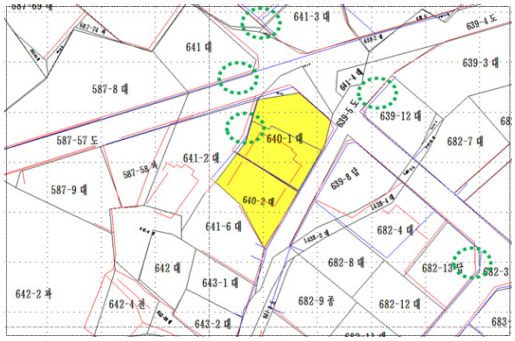

Figure 5. Inconsistent surveying results (northern dir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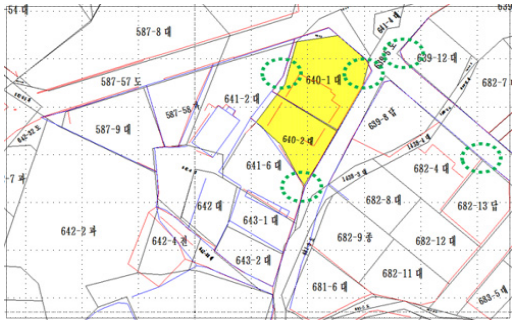

Figure 6. Consistent surveying results (eastern direction)

을 두어 성과 결정한 것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이중 성과가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측량 시 청구토지 동 방향에 위치해 있는 구도로를 분석한 결과 도로 왼쪽은 사정선으로 현재는 경계석이 시공되어 있으며 이 경계석은 사정 당시인 1915년 이후인 1974. 5. 26. 도로분할 측량에 의해 도로가 형성되면서 경계석이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2.4. 등록상 오류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 및 분할 시의 등록상 오류의 대표적 청구사례로는 과거 지적경계복원 측량의 성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지적도상 도로폭을 스케일을 이용하여 산출한 폭과 줄자를 이용하여 실측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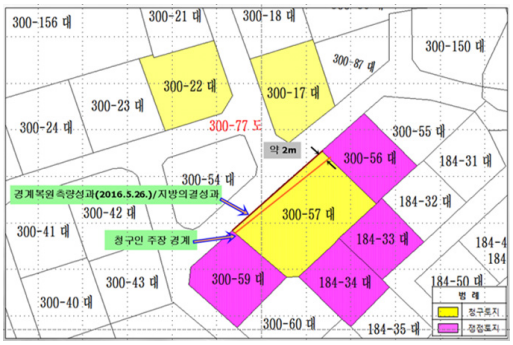

Figure 7. Error of cadastral regi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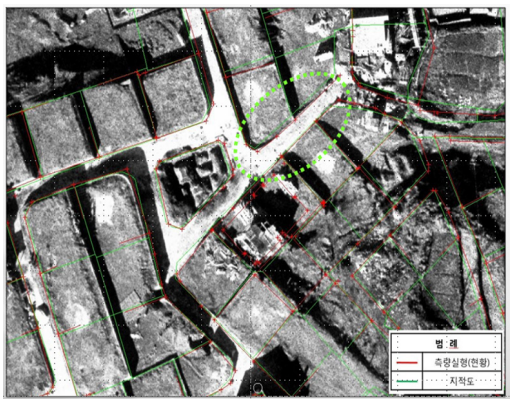

Figure 8. Compare with aerial photo in parcel subdivision

폭이 불일치함에 따라 Figure 7와 같이 청구토지가 300-77(도로)을 약 2m 침범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청구토지 및 주변토지는 1972년도에 개간 허가를 득하여 집단으로 분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Figure 8과 같이 해당지역의 1972년 당시 항공사진을 검토해 본 결과 1972년 토지분할 당시 보강토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항공사진상에 옹벽과 현 지적선의 확인결과 약 1m 정도 불일치하게 시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차례 걸쳐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성과는 서로 상이하며, 이는 기 형성된 서로 다른 블럭의 기지경계선에 중점을 두어 측량성과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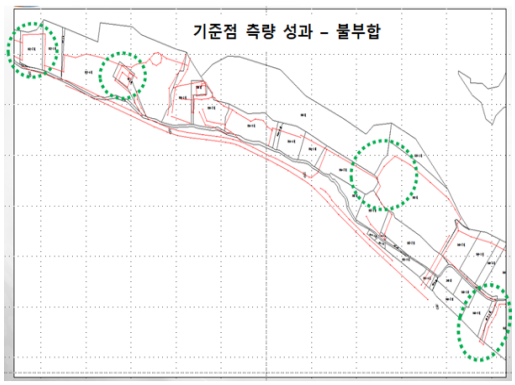

Figure 9. Inconsistent surveying results by control points

그로 인해 블럭별 측량성과 차이로 인하여 도로의 폭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현재 지적도상 도로폭과 현황도로의 폭은 약 1m~1.5m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 필지 경계를 약 2m 이동시켜 보면, 인근지역 측량성과 결정에 불부합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 원인으로는 1972년 실시한 분할측량은 당시 측량 기하적과 불일치하게 나타났으며, 당시 항공사진과 현재의 실형을 비교 검토해 본 결과 분할측량으로 등록당시 300-17번지가 속한 블록은 등록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2.5. 기준점 성과 차이

기준점 가감수치에 따른 기준점성과 차이의 대표적 청구사례로는 먼저 경계복원측량을 기준점에 의해 실시한 이후 배수로를 설치하였으나, 2017년에 실시된 경계복원측량 결과와는 약 3m 차이가 발생하여 적부심사를 청구한 사례이다.

2017년 실시한 경계복원 측량은 Figure 10과 같이 기준점 이동성과(X=+3.5, Y=-2.5)에 따른 것으로 오류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Figure 9의 이전 기준점성과는 인근지역 측량성과 결정에 불부합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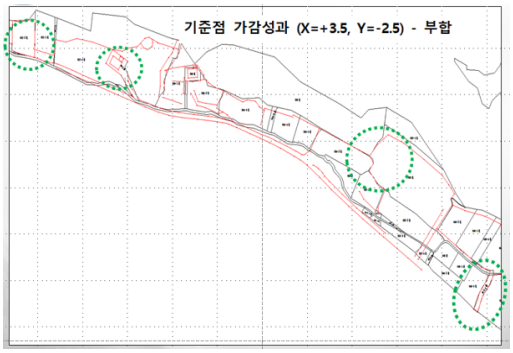

Figure 10. Consistent surveying results by control poi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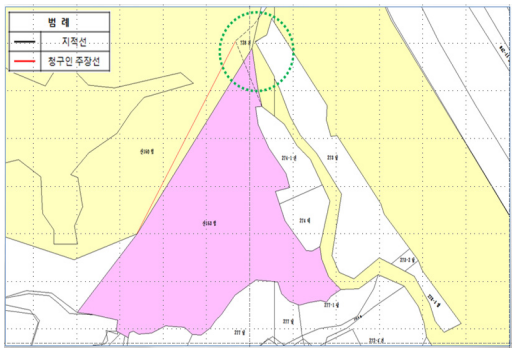

Figure 11. Inconsistent surveying results by double registration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지적도근측량을 한 때에는 지적도근 측량성과에 의하여 기지경계선 부합여부를 반드시 도해적으로 확인하여야 필요가 있다. 법규정대로 지적도근점 성과와 기지경계선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 기준점 및 측량방법을 다르게 하여 지적도근 측량성과를 재확인하여야 하며, 기지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지경계선이 같은 방향과 거리로 이동하여 등록되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기지경계선 등록 당시 지적도근 측량성과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소관청이 지적도근측량 성과에 그 이동 수치를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

3.2.6. 이중등록에 따른 성과 차이

지적공부에 이중등록된 대표적 청구사례로는 지적현황측량 1회, 경계복원측량 4회를 실시하였으나 측량성과가 축척별로 상이하고 인허가를 위한 설계측량과 약 12m의 성과 차이가 발생되어 figure 11과 같이 지적측량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한 내용이다. 청구토지와 쟁점토지 사이의 경계는 1966년 지적복구에 의해 설정되었고, 1976년 신규등록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신규등록 당시 인접토지 경계선을 확인한 후 등록하였어야 하나, 하천 등록 시 임야를 침범하여 이중등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지세부측량당시 도로, 구거, 하천 등은 목측에 의한 점선으로 표시되었는데 이는 사정된 경계선이 아니며, 당시 토지의 지형지물을 이용한 측량을 하여 정확한 경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선등록 우선의 원칙에 따라 먼저 등록된 임야경계선을 기준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례 분석에 관한 고찰

먼저 Table 4에서와 같이 6년 동안 중앙지적위원회에 접수된 138여 건을 시도별 신청 건수를 분석해 보면, 경기도와 경남이 타 시도에 비하여 신청율이 높고, 전남과 경북이 최근 증가세에 있으며, 다소 감소한 서울을 제외하고는 큰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은 그동안 개발제한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는 수도권 팽창으로 인한 개발 행위가 많은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Table 5와 Table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건수 중 기각이 77%, 각하가 21%, 인용이 2%로 기각과 각하의 비율이 98%로 나타났는데, 특히 인용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청구이유가 본인 소유 경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으로 분석된다. 또한 각하 총 건수 29건 중 법원에 소송 계류 중인 건이

52%를 차지하였으며, 측량성과의 다툼이 아닌 대상 등의 청구요건 미비 건이 24%, 90일 기간 내 청구일을 넘기거나 중북 신청 등으로 인한 청구대상 자체가 아닌 건이 24%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하 건 수는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3년간 17건에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9건으로 50%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업무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한 청구인들의 인식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인식오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기각된 사례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오류나 측량성과 결정의 차이 등으로 지적적부재심사 청구의 빌미를 제공한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따라서 지적측량 시행 시 행정구역이 인접해 있는 필지나 축척이 다른 지역에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측량 전 지적공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분할측량 원도 등 과거 측량 기록들을 참고하여 현형법과 기준점 측량 지역을 확인하여 명확한 선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적적부재심사 청구건 중 대표적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Table 7의 순위대로 분석해 보면 먼저 가장 많은 대표적 사례인 청구인 인식오류는 65%(89건)로 기존에 발표된 선행 논문에서도 다수 언급된 것으로 경계분쟁소지 발생 단계부터 지적공부와, 측량원도를 통한 상세한 설명뿐 아니라 대축척 영상자료 등을 구비 제시를 통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하여 청구인의 오해소지를 제거하여 행정력과 비용낭비를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종국에는 지적행정을 불신하고 사법부에 경계확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경우 법원은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의 대법원 예규에 따라서 감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을 하게 된다. 그러나 다수의 지적측량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지적위원회의 성과 심사와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된 성과와는 성과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기다렸다 인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사료 된다. 두 번째 순위의 기준점과 현형법 성과차이는 전체 10%(14건)로 최근 지적측량에 있어서 표준화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기준점에 의한 일필지 측량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데 일률적인 기준점에 의한 성과결정은 경계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지적측량 성과결정 역사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정지 위주의 기지현황선에 따른 현형법에 의한 측량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

같은 비율로 동순위인 측량성과 결정 오류 사례도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광법위하게 주변을 기지사획한 결과와 해당필지가 사정지로 사정선이 변함없이 도로경계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서 이 경우 등록당시의 측량방식대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는 지적측량의 법리 해석을 고려해야 한다. 등록상 오류는 9%(13건)로 앞선 두 사례와 건수로는 별차이가 없었는데 등록전환을 수반한 분할 시의 등록상 오류가 대표적이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측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등록사항정정을 통한 공부의 정비가 우선되야 하나 Figure 8과 같이 여러 필지의 대단위 블록이 해당될 경우 결국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해결을 모색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어려움이 따른다. Figure 9에 나타난 기준점 성과 차이로 인한 사례는 5%(7건)로 주로 지적기초측량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준점 도선 간의 성과 차이로 어느 기준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측량 결과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등록 당시 기준점 좌표의 오류로 필지가 등록 되었을 경우 현재에 와서 수정된 기준점좌표를 사용하여 측량을 하게되면 해당 필지 주위가 일률적으로 기준점좌표 성과 차이 만큼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3조(지적도근점 측량성과의 확인)의 내용대로 현재의 기준점좌표를 수정하여 성과를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1건)로 아주 소수이긴 하나 지적공부의 이중등록으로 인한 성과차이 사례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토지조사당시 비과세지인 도로, 구거, 하천 등은 사

정경계선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목측에 의해 점선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그 후 지적법이 제정 되면서 비과세지도 신규등록함에 따라 하천선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인근의 선등록된 임야 경계선이나 토지경계선을 먼저 조사한 뒤 그 기준을 참고하여 등록하여야 이중등록 등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이상에서 나타난 지적측량적부심사 유형별 사례 중 청구인 인식오류나, 기준점과 현형법간의 성과차이, 기준점 성과차이의 분쟁 등은 등록당시의 측량방법이나 측량당시의 기준점을 사용하던지 이마저도 어려우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기지점을 활용하거나 기초측량에 의하여 해당필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내어 측량해야 한다는 지적측량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나, 이중등록이나 등록상 오류와 같은 사례는 일반적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도중에 발견되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이 경우 지적측량 시 서로 다른 축척이나 행정구역이 인접하는 토지의 경우 대축척 영상 자료에 지적공부를 중첩시켜 분쟁소지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도해지역의 지적세부측량 시 전자평판에 제공하는 공간정보영상은 해상도 등의 문제로 단순 참고만 할 뿐 실제 사용은 제한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고해상도 드론 영상 등을 상시 확보하여 현지 측량 시 적극 활용하여 경계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적제도에 있어 지적측량의 경계이론, 경계분쟁 원인과 지적위원회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최근 6년간의 지적측량적부재심사에 청구된 138건을 대상으로 유형별 대표적 사례를 기술적 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지적적부재심사 청구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해마다 일정 수준의 꾸준한 청구 수량을 보이고 있었고 그 수량은 향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각하 비율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는데 이는 업무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청구인들의 인식 변화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심의 결과 기각이 전체 77%(106건)에 해당될 정도로 높은 비율이었지만, 기각 내용 중 지적측량의 성과 차이 및 소홀한 부분으로 청구 빌미를 제공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이의 해소를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셋째, 사례 중 청구인 인식오류가 약 65%(89건)의 비율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민원발생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분쟁 해소를 위한 설득과 이해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청구건 중에 경계복원측량 결과와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영상지도를 중첩하여 불일치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오해에 따른 사안으로 앞으로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홍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같은 비율의 발생 빈도를 보인 기준점과 현형법 성과 차이 부분과 측량성과 결정 오류 부분에 있어서는 측량 시 측량지역마다 각각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아 경계결정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 경우 기준점을 맹신하기 보다는 등록당시 측량방법을 유념한 사정필지 존재 여부와 기준점 이력을 적극 참조 활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청구 건 중 공부상의 이중 등록 및 등록 오류로 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축척이나 행정구역이 인접하는 토지의 지적측량 시, 측량 전에 토지이동연혁도면과 고해상도 드론영상 등을 이용한 대축척 영상정보를 참조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적적부재심사 결과에 승복 못하고 종국에 경계확정소송을 제기 시 법원은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의 대법원 규정에 따라서 감

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을 하게 된다. 그러나 다수의 지적측량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지적위원회의 성과 심사와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된 성과와는 성과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기다렸다 인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사료된다.

끝으로 독일을 비롯한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지상경계를 원칙으로 하고 대부분 지상의 필지 경계점에 영구고정물 표지 설치를 의무화 하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공동으로 확인 서명한 토지경계와 위치약도를 관할기관에 영구 보존하고 후속 측량 시 참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에서도 앞서 결론 내용을 참조하고 해외에서의 경계점 관리 방식 등을 도입한다면 지적측량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References

원영희. 1979. 지적학원론. 홍익문화사. p25

Won YH. 1979. Cadastral Science. Hongik Culture Co., Inc. p25

한국국토정보공사. 2020. 최신지적측량. 구미서관. pp7-8

LX. 2020. *The Latest Cadastral Survey*. goomibook. pp7-8

윤석준. 2003. 토지경계분쟁의 실태와 경계설정 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일대학 교 대학원. pp. 7-14

Yun SJ. 2003. *A Study on Condition of the Land Boundary Diputes and Their Solution*. Master Thesis. Kyungil University. pp. 7-14

김재복. 2005.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1(2): 113-128

Kim JB. 2005. *A Study on Improvement of Cadastral Result Inspect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21(2) : 113-128

최영창. 2006.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2(2):111-124

Choi YC. 200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adastral surveying screening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22(2): 111-124

유대현. 2008. 토지경계분쟁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pp. 11-18

Yu DH. 2008.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 for Solution of Land Boundary Disputes* Master Thesis. MyungJi University. pp.11-18

송명경. 2009.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5(2): 311-313

Song MK.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adastral Surveying Screen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25(2) : 311-313

김일. 2019.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5(1): 1-12

Kim IL. 2019.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Cadastral Surveying Screening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35(1) : 1-12

문승주. 2020. 토지경계 침범 유형 및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6(2): 52-53

Mun SJ. 2020. *A Study on Patterns of Land Boundary Violations and its Improv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36(2) : 52-53

김태훈. 1995. 지상경계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1): 35

Kim TH. 1995. Study on the legal effect of boundary on the ground surfa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3(1) : 35

곽윤직. 1981. 부동산등기법. 대왕사. p49

Kwak YJ. 1981.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DeaWangSa Co., Inc. p49

조선총독부. 1915. 토지측량표식규칙중 개정건. 조선총독부령1호,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1915. *Revision of the Land Survey Markings Rules*. Decree No. 1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남윤구. 2010. 토지경계분쟁 해결을 위한 3차원 지적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 위논문. 경일대학교대학원.pp 20-21, 28-40

Nam YG. 2010. *A Study on the 3-Dementional Cadastral Utilization for Resolving Land Disputes*. Doctoral Dissertation. Kyungil University. pp. 20-21, 28-40

2022년 10월 06일 원고접수(Received)
2022년 10월 17일 1차심사(1st Reviewed)
2022년 10월 31일 2차심사(2st Reviewed)
2022년 11월 22일 게재확정(Accepted)

초 록

지적측량사가 지적경계복원측량을 통하여 지상에 표시한 경계는 소유자의 소유권의 한계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구속력과 확정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등록상의 오류라든지 측량상의 문제, 소유자의 경계점 인식 오류 등 제반 요인들로 인하여 매년 지적측량 분쟁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적측량 이해당사자들은 지적측량의 이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민원제기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통한 해결 방법과 법원을 통한 경계확정소송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 결과 경계에 인접한 이해 당사자 들은 물론 관련 공적 기관들에 있어 민원 해결을 위한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과 경계결정에 대한 사항을 고찰하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여 동안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대표적 사례들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추후 지적측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들 사례를 참고하여 경계분쟁 사례를 줄이고 지적측량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 지적경계복원측량, 경계확정소송,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재심사, 경계분쟁